

(○ ○ 공 관)

수 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(경 유) 외교부장관
제 목 재외투표 송부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의 재외투표를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 21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부합니다.

인수일자	재외투표 인수수		비 고
	일 계	누 계	
총 계			

- 붙임 : 1. 재외투표소투표록 1부.
2. 재외선거관리록 1부. 끝.

○ ○ 재외투표관리관 인

- 주: 1.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를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 이 서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고한다.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 명의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 명의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.
2.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투표의 일부를 먼저 송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투표록의 인계인수서 사본을 별도 송부하며, 재외투표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때에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을 함께 송부하고, 재외투표 인수수는 송부일 현재의 일계와 누계를 기재한다.